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가단108948 판결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포항시

소송대리인 B, C

변론 종결2021. 11. 9.

판결 선고2021.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22. 접수 제2438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0. 10.경 설립되었고, 설립일 이후 E가 34%, F 및 원고가 각 33%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F는 원고의 삼촌이며 E는 F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138,167,08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추징하였는데, 위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5. 1.경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1) 2)}로 지정하여 그 체납액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를 근거로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22. 접수 제2438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2) 위 사실을 전제로, 원고는 '삼촌인 F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당연히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히무효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히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히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F와 E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과세관청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판단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곧바로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예금거래내역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원고 제출의 증거 등을 살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이후에야 밝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진우

별지

1)지방세기본법 (법개정으로 조문의 위치, 문구가 변경되었으나, 규정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하 같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